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-118호

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5월 06일
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
4. 정비구역의 면적 : 11,042.2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우석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42, 2동 1~2라인 지하
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
8. 사업시행인가일 : 2020. 9.16.

9. 변경 사유: 사업시행자의 건축계획 변경

가. 주요 변경 사항

- 1) 세대 평형 비율 변경(세대수 변경 없음)
- 2) 단위세대 내부 평면 변경
- 3) 지하층연면적 304.7㎡ 증가(주차대수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변경)
- 4) 외벽 재료 및 입면 변경 등

10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2)에 비치 보관.

끝.